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97 발의연월일: 2020. 12. 3.

발 의 자:이종성・임이자・이 용

허은아 · 정진석 · 정운천

김영식 • 박덕흠 • 성일종

김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예방하기 위하여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다양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철 저한 보호 조치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에 대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5호의2 및 제49조제1항제15호 신설).

법률 제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9조의2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 제49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49조의2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2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했 개 아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의 수립 등) ① (생 략) 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49조의2에 따른 감염취 <신 설> 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방 안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 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감염 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 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14. (현행과 같음) 1. ~ 14. (생 략) <신 설> 15. 제49조의2에 따른 감염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 는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